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5년 11월 16일 조례 제1422호
일부개정 2016년 7월 19일 조례 제1501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18년 10월 11일 조례 제1672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21년 12월 23일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원활히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매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사이에 의사소통을 하거나 유익한 정보를 공유·제공하여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시정소식지, 인터넷 방송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등을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3. “시민기자 등”이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이나 지역 소식 등의 각종 콘텐츠를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매체에 제공하는 시민기자, 시민필진, 시민리포터 등을 말한다.
4. “전문가”란 콘텐츠 제작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전문필진, 전문리포터, 시나리오 작가, 아나운서 등을 말한다.
5. “이벤트”란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제3조(사업) 시장은 시민에게 최신의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활발한 시정참여를 돕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개설, 운영하여야 하며 각 매체를 이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1. 시정소식지 제작
2. 인터넷 방송국 운영
3. 시 대표 블로그 및 SNS 운영

제4조(시정소식지 운영) ① 시정소식지의 명칭은 “Fresh Energy 오산”이라 하고 발행인은 시장으로 한다.

② 시장은 매월 1회 시정소식지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발행부수는 시의 인구 및 가구수를 고려하여 조정한다.

③ 시장은 시정소식지를 시민으로 대상으로 무료로 배부하며, 구독을 신청하는 개인이나 공공기관, 단체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도 배부할 수 있다.

제5조(인터넷 방송국 운영) ① 인터넷 방송국의 명칭은 “OSTV”라 하고 제작인은 시장으로 한다.

② 시장은 인터넷 방송국을 통하여 시장뉴스, 시민알림판, 공익광고, 기획시리즈 등을 방송할 수 있다.

제6조(전문가의 활용 및 보상) ① 시정소식지 제작 및 인터넷 방송국 운영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전문가에 의해 제출된 콘텐츠는 반환하지 않으며, 채택된 콘텐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제7조(시 대표블로그 및 SNS 등 운영) ① 시장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제작 운영하며 다른 SNS를 사용하는 시민 증가 시 해당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가 운영하는 SNS 등에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SNS 소통민원창구 운영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8. 10. 11>

③ 시장은 시 대표블로그 및 SNS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기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관계 중심적인 매체의 구독자(이웃, 팬, 친구, 팔로워 등) 확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벤트나 광고를 할 수 있다.

제8조(게재내용) 시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시민소통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재난재해 시 관련 정보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항
3. 시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
4. 경제, 교육, 문화, 교육 및 생활정보 등 시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5. 의견, 투고, 만화, 칼럼, 미담사례 등에 관한 사항
6.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7. 국정·도정·시정·의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와 관련된 사항 등

제9조(시민기자 등 운영) ① 시장은 시정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공공에 유용한 내용을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시민기자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시민기자 등은 시에 거주 또는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활동을 희망하는 자로 하되, 성별·연령층 등 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시민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기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자료수집, 교육, 연수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민기자 등이 시에서 운영하는 매체에 콘텐츠를 제공하여 채택되어 게시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2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⑥ 시민기자 등이 제출한 콘텐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민기자 등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시민기자 등의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매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7. 19, 2021. 12. 23〉

제11조(경품의 제공) ①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과 정보공유 및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시와 시민 간의 소통강화를 위한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2.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정보공유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3. 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홍보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4.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의견수렴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5. 그 밖에 시정홍보 활동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② 시장은 시민참여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절차 등 그 밖에 이벤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보상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 Fresh Energy 오산 소식지 발행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시민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시민기자 등은 이 조례에 의거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 7. 19 조례 제1501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⑫ 부터 ④3 까지 생략

부칙 〈2018. 10. 11 조례 제1672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21. 12. 23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

㉔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㉕ 부터 ㉗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별표 1]

전문가 보상 기준(제6조 관련)

대상	아나운서	시나리오 작가	전문리포터	전문필진
구분	방송국	방송국	방송국	시정소식지
방법	콘텐츠 게시			
1인당 제공액수 한도	3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연간 운영 횟수	80회 이내	130회 이내	20회 이내	15회 이내

[별표 2]

시민기자 등 보상 기준(제9조 관련)

대 상	시민기자 등	
구 분	시정소식지	인터넷 방송국, 블로그
방 법	채택	
1인당 제공액수 한도	3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1회 운영당 제공액수 한도	100만원 이하	120만원 이하
연간 운영 횟수	15회 이내	15회 이내

[별표 3]

시민 참여자 경품제공 기준(제11조 관련)

대 상	일반 시민 참여자	
구 분	각종 축제 및 행사 등	
	직접 참여	이벤트 참여
방 법	선착순이나 추첨	추첨
1인당 제공액수 한도	1만원 이하	1만원 이하
1회 운영당 제공액수 한도	25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연간 운영 횟수	5회 이내	15회 이내

※ 비 고

1. “직접 참여”란 시가 주최하는 각종 오프라인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이벤트 참여”란 시가 운영하는 매체를 통하여 각종 행사나 축제 또는 시정 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 하거나 널리 알리기 위해 설문조사, 투표, 댓글, 구독, 추천, 공유 등의 방법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